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02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산업통상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정보 삭제 권고 및 공표 등을 위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개정('25.12.2., 법률제21157호)으로 안전성 조사 절차, 위해성 확인 제품에 대한 삭제 권고 및 공표 절차,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범위 신설(안 제1조의2)
- 나.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내용·방법·절차 및 결과 공표·제공·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및 제3조)
-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의 조치 권고 및 공표, 조치의 결과보고, 해제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8조, 제11조)
- 라. 어린이제품등 시장감시업무 수행 및 안전정보 제공요청 관련 사항(안 제15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마.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1항)

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면제 등 업무 관련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이메일 : yskim16@korea.kr

- 팩스 : 043-870-5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 870-5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